

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

「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『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』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2월 15일

서울특별시

1. 적용대상 :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외 부지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

※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부지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.

2. 적용요율

적용기간	대부요율(단위: kW·년)
2018년	○ 설비용량 100kW 초과 : 25,000원 ○ 설비용량 100kW 이하 : 20,000원

※ 설비용량(kW)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

3. 적용기준

-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
-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(02-2133-37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